의정활동보고서

제331회 임시회(2022. 6. 15. ~ 6. 23.)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31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제331회 임시회는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4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초심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소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신뢰받는 경상북도

의회를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 졌고,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의회 청렴도 2등급 달성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제일의 광역의회로 거듭나고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수많은 성과와 결과로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이 같은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31회 임시회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상북도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은 변화와 개혁의 높은 파도와 바람에 맞서 대전환의 시대를 당당히 헤쳐 나가야 합니다.

지방소멸로 치닫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및 미래 먹거리 개발 등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경제와 사회·문화를 비롯한 우리 경북 전 분야의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창의적으로 되살려

경상북도가 다시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역량과 고난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경북의 정신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도민들을 믿고 새로운 각오와 굳은 의지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와 협조하면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11대 도의회에 보여 주신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차 례

Ⅰ. 개 황 ····· 9

Ⅱ. 의사일정 ····· 10

Ⅲ. 의안처리 ····· 15

Ⅳ. 민원처리 ····· 16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7

부 록

□ 조 례 안(12건) ····· 23

□ 규 칙 안(1건) ····· 111

□ 동 의 안(6건) ····· 115

Ⅰ. 개 황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2022년 6월 15일에 개회하여 6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 동안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4회, 특별위원회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5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2021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경상북도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민생조례안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32회 임시회로 2022년 7월 4일(월) 오후 2시에 개회를 약속하고 폐회를 선포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다. 집회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2년 6월 15일 ~ 6월 23일(9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62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상임위원회							특 위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예결결산	기타
금 회	8	1	1	1	0	0	0	1	0	4
누 계	873	72	114	104	87	80	83	93	114	126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1:00 (제1차)	▢ 안건처리 ○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	
6. 23.(목) 11:0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23.(목) 11:00 (제2차)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0:4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3:45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4: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3: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0:00 (제4차)	▢ 안건처리 ○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9:50 (제6차)	□ 안건처리 ○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0:15 (제5차)	□ 안건처리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6. 15.(수) 10:00 (제4차)	□ 안건처리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결		부결	기타	폐안			
					원안	수정						
계		24 (1,131)	23 (1,104)	23 (1,099)	23 (1,022)	0 (69)	0 (0)	0 (3)	0 (5)	0 (5)	1 (27)	
조례안	소 계	13 (658)	12 (634)	12 (632)	12 (587)	0 (43)	0 (0)	0 (0)	0 (2)	0 (2)	1 (24)	
	의원발의	4 (448)	3 (424)	3 (423)	3 (397)	(25)			(1)	(1)	1 (24)	
	위원장 제안	1 (35)	1 (35)	1 (35)	1 (35)							
	도지사 제출	6 (126)	6 (126)	6 (125)	6 (109)	(16)				(1)		
	교육감 제출	2 (49)	2 (49)	2 (49)	2 (46)	(2)			(1)			
규칙안		1 (21)	1 (21)	1 (21)	1 (21)							
예산·결산		0 (41)	0 (41)	0 (41)	(23)	(18)						
동의·승인		6 (159)	6 (159)	6 (156)	6 (146)	(8)			(2)	(3)		
건의안		0 (6)	0 (6)	0 (6)	(6)							
결의안		0 (66)	0 (65)	0 (65)	(65)						(1)	
기타안		4 (179)	4 (177)	4 (177)	4 (174)			(3)			(2)	
청원		0 (1)	0 (1)	0 (1)					(1)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31회)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금회		
1		1	

2. 진 정

위원회	접수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79)	1 (79)	1 (72)	(5)		(2)	
의회운영	(6)	(6)		(5)		(1)	
기획경제	(11)	(11)	(11)				
행 정 보건복지	(14)	(14)	(14)				
문화환경	(16)	(16)	(16)				
농 수 산	(13)	(13)	(12)			(1)	
건설소방	(13)	1 (13)	1 (13)				
교 육	(6)	(6)	(6)				
특별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24건(조례안 13, 규칙안 1, 동의안 6, 기타안 4)

2. 의안처리 : 23건

○ 원안가결 : 23건(조례안 12, 규칙안 1, 동의안 6, 기타안 4)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13건(원안가결 12, 상정유보 1)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2.6.15.	위원회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	이선희 의원 외 16명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	김상조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2.6.3.	도지사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	도지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도지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도지사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도지사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도지사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0	'22.6.3.	박미경 의원 외 12명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상정 유보
11	〃	박용선 의원 외 9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
12	〃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13	〃	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규 칙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2.6.15.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 동 의 안 : 6건(원안가결 6)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2.6.3.	도지사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원안 가결
2	〃	도지사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	도지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4	〃	도지사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	도지사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6	〃	교육감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기 타 안 : 4건(원안가결 4)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2.6.15.	의장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	의장	휴회의 건	〃
4	'22.6.23.	의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조례 및 규칙공포 사항 : 13건(도의회 1, 도 9, 교육청 3)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109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22.6.30.	도의회
2	제4706호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1.	도
3	제4707호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1	〃
4	제4708호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1	〃
5	제4709호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2.7.11	〃
6	제4705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2.7.7.	〃
7	제4710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1	〃
8	제4711호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1	〃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9	제4712호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1	도
10	제4713호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1	〃
11	제4714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22.7.14.	교육청
12	제4715호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2.7.14.	〃
13	제4716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2.7.14.	〃

부 록

□ 조 례 안(12건) ····· 23

□ 규 칙 안(1건) ····· 111

□ 동 의 안(6건) ····· 115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22. 6. 15.)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희 의원 외 16명('22. 6. 15.)

○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조 의원 외 15명('22. 6. 15.)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박용선 의원 외 9명('22. 6. 3.)

○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22. 6. 3.)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2. 6. 3.)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앙정부차원의”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획하는”을 “계획(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종료되기 전에 계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생 략)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1.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2.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또는「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생 략)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계획(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종료되기 전에 계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원 수행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도지사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사업)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행기간)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에게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007명””을 “”8,0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50명”을 “2,26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8,024	-						
정 무 직		3	1					2	
일반직	소 계	2,133	-						
	2급	1				1			
	2 ~ 3급	2	1	1					
	3 급	12	9		1	2			
	3 ~ 4급	2	2						
	4급	97	63	9	5	9	9	1	1
	5급 이하	2,004	-						
	전문경력관	15	-						
별정직	소 계	17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연구직	소 계	243	-						
	연구관	44			43		1		
	연구사	199	-						
지도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방직	소 계	5,554	-						
	소방정	27	5		22				
	소방령 이하	5,527	-						
교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07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8,024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2,250명	1. ---------- 2,267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중소벤처기업과 에너지산업과 공통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군수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41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1조	
중소벤처기업과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민생경제과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군수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2조의4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 대부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같은 법 제12조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2항	시장·군수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12조제7항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같은 법 제13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16조	
	타.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같은 법 제18조의8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3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시장·군수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공급실적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신고	같은 법 46조의2제1항	
	마. 조합 해산 신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같은 법 제81조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같은 법 제82조	
	아. 청문	같은 법 제83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8조제4항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무자의 지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사 회 적 경 제 과	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		시장·군수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회 적 경 제 과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같은 법 제16조	시장·군수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같은 법 제56조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같은 법 제57조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9조	
	바. 신고필증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 통 정 책 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시장·군수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같은 법 제19조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제20조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1조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8항	시장·군수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5.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6.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27.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28.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시행규칙 제8조	
	29.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 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시장·군수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88조제5항	
	32.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같은 법 제83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3.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	
	34.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35.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나.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라.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휴업·폐업허가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시장·군수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카.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같은 법 제43조	
	36.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37.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8.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39.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56조의2	
	40.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시장·군수
	아. 상속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같은 법 제16조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 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1.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5조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계획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시장·군수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카. 과태료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2.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43.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같은 법 제60조제1항	
	44.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45.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제7호	
	46.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17조	
	47.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48.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관련 보고·검사	같은 법 제61조제1항	
	49.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교통안전법」 제54조 제1항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40조의5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범죄경력의 확인	같은 법 제9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외 교 통 상 과	1.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3조의2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3호, 제4항	
회 계 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시장·군수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같은 조례 제64조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같은 조례 제3조	
문 화 예 술 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
	2.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3.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제13조에 따른 행위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 업 정 책 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 건)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농 식 품 유 통 과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군수
	1.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2. 시료 수거 등	같은 법 제62조	
	3.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6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3조	
친 환 경 농 업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장·군수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농 촌 활 력 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시장·군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같은 법 제24조	
축 산 정 책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축산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같은법 제12조	
동 물 방 역 과	1.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	시장·군수
환 경 정 책 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	시장·군수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4. 관계기관 협의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5.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시장·군수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7호·제8호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같은 법 제94조제4항 제5호·제6호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다음 사항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중요사항 변경을 포함 한다)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같은 법 제25조제2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등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 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4)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	
	5)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같은 법 제25조제4항	
	6)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부여	같은 법 제25조제7항	
	7) 폐기물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8)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3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9)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시장·군수
	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취소(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체납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23조의3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항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 처리 확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59조의2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시장·군수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접수·수리, 권리자에 통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같은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항·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계약의 갱신 명령 등	같은 법 제40조제8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 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양수·인수·합병 등 경우 허가, 관계기관 협조 등	같은 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시장·군수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및 제66조, 별표 17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제5의3제2호라목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및 39조의3	
	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니.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반입재개 신청 접수 및 통보	같은 법 제47조의2	
	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제1항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10.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시장·군수 (팔공산도립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자연공원법」 제3조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 관리	같은 법 제19조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같은 법 제20조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3조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24조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자.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하. 대집행	같은 법 제31조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너. 허가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71조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7조의3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3조	
	버.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 제73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시장·군수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	같은 법 제23조	
	바. 과징금의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같은 법 제27조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8조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 철회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3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시장·군수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같은 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 수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제45조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조합과 협의 등	같은 법 제45조·제46조	
	러. 청문	같은 법 제57조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다. 공회전 단속업무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1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제20조의11	시장·군수
	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다.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는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환 경 안 전 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시장·군수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3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82조제1항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시장·군수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같은 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6조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차.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7조	
	카.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2조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같은 법 제44조·제45조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85조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10.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 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제4항	
	11.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12.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같은 법 제21조제1항	
	13.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21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1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	같은 법 제56조제1항 · 제2항	시장·군수
	15.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제2항	
	1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라. 청문	같은 법 제30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맑 은 물 정 책 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시장·군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 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자원과	1. 산림기술자 배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장·군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원의 배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같은 법 제6조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같은 법 제1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같은 법 제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같은 법 제13조의6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9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자원과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군수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 제4항	
	사. 복구의 대집행 등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징수	같은 법 제43조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3항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자원과	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장·군수
	8.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나. 독림가(자영독림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산림산업관광과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 제3조	시장·군수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공통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및 제52조제1항	
보건정책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군수
식품의약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약사법」 제31조제5항	시장·군수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약사법」 제45조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의 약과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및 제103조	시장·군수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약사법」(법률 제1491호) 부칙 제4조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6조제2항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같은 법 제7조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	
	9.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같은 법 제13조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44조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제3항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같은 법 제8조	
	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도시계획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시장·군수
	가.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1조제2항	시장·군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0항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제1항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8조	
	카. 법 제13조의4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6조	
	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5)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주요 유치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시장·군수(「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5항에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0호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3.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포항시-영일만, 영일만2)	「지방자치법」 제198조	시장·군수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같은 법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같은 법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같은 법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같은 법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37조제5항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같은 법 제48조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4.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정한다)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한다) 라. 주차장 마. 궤도 바. 시장 사. 공공청사 아. 수도공급설비 자. 하수도 차. 도축장 카. 방풍설비 타. 사방설비 파. 방화설비 하. 방조설비 거. 연구시설 너. 문화시설 더. 사회복지시설 러. 공공직업훈련시설 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버. 광장(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으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서. 하천(「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으로 한다) 어. 공공공지 저. 전기공급설비 처. 장사시설 커. 저수지 터. 가스공급설비 퍼. 방수설비 허. 유수지 고. 폐차장 노. 청소년수련시설 도.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모. 자동차정류장 보. 열공급설비 소. 방송·통신시설 오. 공동구 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초. 종합의료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시장·군수
	5.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결정 및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6항	
	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 제88조제9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2조	시장·군수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53조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를 포함한다)·고시·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10.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같은 법 제98조	
	11.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3.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	
	1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	
	15.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1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17.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18.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19.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50조	
	2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21.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22.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23.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시장·군수
	2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25.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6.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	
	27.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28.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29.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30.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17조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	
	3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3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시장·군수 시행사업을 제외한다)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47조 및 제5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3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보고, 공고	같은 법 제61조	시장·군수
	3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같은 법 제76조의2	
	37. 감독 및 감사 등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	
	38.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330만㎡ 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39.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공공기관 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40. 선수금의 수령 및 채권발행 승인	같은 법 제20조	
	41. 감독(지정 또는 승인취소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	
	42.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	같은 법 제24조	
도로철도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및 제74조	시장·군수
	2. 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제110조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4.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같은 법 제33조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40조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	같은 법 제31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0조	시장·군수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같은 법 제83조	
	12.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5조	
	14.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같은 법 제7조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도로법」 제81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같은 법 제14조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같은 법 제15조	
	다. 협의	같은 법 제16조	
	라. 계약의 체결	같은 법 제17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2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제28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8. 미불용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시장·군수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같은 법 제17조	
	21. 등록번호표 반납	같은 법 제9조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23.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25조의2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44조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51조 및 제52조	
	27. 원인자 부담금	같은 법 제91조	
	28.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29. 과오납금 반환	같은 법 제94조	
	30.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31.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32.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나.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33. 건설기계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디자인	1.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주택법」 제43조	시장·군수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같은 법 제16조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음 권한		
	가.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나.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대집행	같은 법 제7조제2항	
토지정보과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시장·군수
	가. 도로명 부여·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한정한다)		
	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다. 고지에 관한 사항		
하천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하천법」 제5조제2항	시장·군수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같은 법 제13조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같은 법 제14조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같은 법 제52조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7조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같은 법 제3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천 과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를 포함한다) 취입보, 하천 복개는 제외한다) 및 고시	같은 법 제33조	시장·군수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36조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1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38조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7조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9조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같은 법 제70조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명령 권한	같은 법 제72조 및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같은 법 제90조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같은 법 제75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46조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같은 법 제47조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같은 법 제48조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91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천 과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시장·군수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하천법」제85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한정한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5.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변경계획 수립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26.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가. 보상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다.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너 지 산 업 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장·군수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1조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같은 법 제39조제5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산업과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같은 법 제39조제6항·제7항	시장·군수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4항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	
	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시장·군수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 내 전보권(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 기관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권(과장급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농업 기술원장
	3. 연구사의 원내 전보권(본원과 지원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보건환경 연구원장
소방 행정과	소방학교·소방서 또는 119특수대응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호봉확정 및 승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7조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및 119특수 대응단장
대응 예방과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소방서장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다. 지위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 법 제35조	
	마.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6조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4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의 사업소 내 전보권(본소와 지소 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사업소장
동물방역과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팔공산 도립공원구역에 한정한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 공원구역 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자연공원법」 제3조	
	2.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같은 법 제19조	
	3.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같은 법 제20조	
	4.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3조	
	5. 공원구역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24조	
	6.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7.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8.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9.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10.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11.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12.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13.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14. 대집행 15.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6. 허가에 관한 협의 17.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 공원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9.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0. 주민지원사업 21.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22.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1조 및 제72조 같은 법 제17조의3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팔공산도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도 로 철 도 과	1.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2. 도로표지 정비 3.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 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55조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제52조	북부건설 사업소장, 남부건설 사업소장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5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투 자 유치실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조치		
관 광 정책과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관광진흥법」 제5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	같은 법 제53조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같은 법 제54조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같은 법 제55조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56조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 명령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관 광 정책과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 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체 육 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바. 시정명령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자. 청문실시 차. 과태료 부과·징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정책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안전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호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같은 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 명령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8호	
	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9호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0호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제63조제1항제16호	
	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안전과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같은 법 제42조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7항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45조제4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안전과	마.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8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바. 청문	같은 법 제85조	
	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	같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제13호	
	나. 청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4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7조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보 건 정책과	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나. 의료보수의 신고	같은 법 제45조	
식 품 의약과	1.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 품 의약과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같은 법 제10조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거.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너.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러. 청문	같은 법 제45조	
	머.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	「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다. 보고 지시와 검사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제1항	
	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	
	바.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 품 의약과	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자.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76조제1항	
	차. 청문	같은 법 제77조	
	카. 약사감시원 등 임명	같은 법 제78조	
	타. 허가증 갱신	같은 법 제80조	
	파.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	
	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도 시 계획과	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2조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 권한 및 서류의 공람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한	같은 법 제98조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도시개발법」 제3조, 4조, 제9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획과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7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13조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29조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	같은 법 제46조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같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제3항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제1·3·4항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제3항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제2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획과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제1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어.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5.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나.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전환 및 고시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다. 실시계획 협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의뢰,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준공인가 및 공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	
	사.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같은 법 제38조	
	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4	
	차.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6조	
	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	같은 법 제48조	
	파. 산업단지계획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획과	6. 기초조사의 실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같은 법 제6조제3항	
	8.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권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및 설립 인가 취소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5항	
	다. 관리업무의 위임·위탁	같은 법 제31조제1항	
	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승인, 고시 및 운영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 제33조의2제3항	
	마. 입주계약의 체결 및 해지	같은 법 제38조, 제42조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사.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8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5조제3항	
	9.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1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건축디 자인과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제15조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19조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같은 법 제25조	
	라.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같은 법 제4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디자인과	마.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47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바.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같은 법 제30조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토 지 정보과	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지번변경의 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나.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같은 법 제69조제1항	
	다. 지적공부의 복구	같은 법 제74조	
	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마. 축척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	
	바.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같은 법 제25조	
	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같은 법 제8조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같은 법 제27조	
민 생 경제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같은 법 제4조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7조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제3항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같은 법 제9조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제과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	같은 법 제1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	같은 법 제16조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명령, 시설 등의 봉인	같은 법 제29조	
	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	같은 법 제34조	
	카.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같은 법 제38조	
	타. 청문	같은 법 제40조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혜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30조	
	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같은 법 제38조	
	아. 청문	같은 법 제4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제과	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9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33조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같은 법 제38조	
	마. 청문	같은 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같은 법 제9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제4항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3항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15조제6항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같은 법 제15조제7항	
	자. 완성검사	같은 법 제16조제3항	
	차. 임시사용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4항	
	카. 용기 등의 검사	같은 법 제17조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같은 법 제18조	
	파. 위해 방지조치 등	같은 법 제24조	
	하. 청문	같은 법 제35조의3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제과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 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중 석유판매 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의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7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로 한다.

제2조 중 "전년도 12. 31현재 19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31현재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 18세 ---------- ----------.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 ----------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 ---------- 제7항 ---------- ----------.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은”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를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5배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은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 7. (생 략)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현행과 같음) 4.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5. ~ 7. (현행과 같음) 8. ---------- 중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7명 이내로”를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과반수는”을 “5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감사관으로 한다”를 “자치행정국장이 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생 략)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5명은 ----------.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③ ----------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기숙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3. “화재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3.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4. 학교 소방시설등 설치방안
5. 학교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방안
6. 그 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소방시설등 설치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소방시설등과 학교 전기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입법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남, 여)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 이상	0.5%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비율	35% 이내	65% 이상

4. 특정직공무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기관별 /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총 계	**5,501**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5,049**	-			
3 급	3		3		
3~4급	5		5		
4 급	20	1	18	1	
5급 이하 소계	5,005	-			
전문경력관 소계	16	-			
연구직 계	**24**	-			
연구사	24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특정직 계	**424**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9	-	25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75	-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 이상	0.5%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신설〉

3. 특정직공무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td><td>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 이상	0.5%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비율	35% 이내	65% 이상

4. 특정직공무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립고등학교
총 계	5,501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5,052	-			
3 급	3		3		
3~4급	5		5		
4 급	20	1	18	1	
5급 이하 소계	5,008	-			
전문경력관 소계	16	-			
연구직 계	24	-			
연구사	24	-			
<신설>					
<신설>					
특정직 계	424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9	-	25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75	-			

[별표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립고등학교
총 계	-	-			
정무직 계	-		-		
교육감	-		-		
일반직 계	5,049	-			
3 급	-		-		
3~4급	-		-		
4 급	-	-	-	-	
5급 이하 소계	5,005	-			
전문경력관 소계	-	-			
연구직 계	-	-			
연구사	-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특정직 계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	-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			

〓 규 칙 안 〓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22. 6. 15.)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의회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마차지”를 “마치지”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개의 1시간 전”을 “개의일 전일(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심사기간) ① (생 략)	제25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차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마치지 ----------.
제42조(5분 자유발언) ① (생 략)	제42조(5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	② ---------- 개의일 전일(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동 의 안

○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도지사('22. 6. 3.)

○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지사('22. 6. 3.)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22. 6. 3.)

○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22. 6. 3.)

○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22. 6. 3.)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

□ 목 적

○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울진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3.6)됨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게 도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회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취득세 :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하 "피해일"이라 한다)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 감면대상자가 산불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면허(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감면대상자가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를 준용한다.

□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경상북도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주요내용**

①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도청신도시 공공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 기록원의 부지 위치 변경 및 사업비 증액

※ 광역시·도 기록원 설치·운영 의무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
- 위 치

(변경 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경북도서관 옆)

(변경 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8(천년숲 앞)

- 총사업비 : 49,041백만원(도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변경사유)
도비(변경 전)	46,300	5,600	400	40,300	※ 제319회 도의회 의결('20.10.7)
도비(변경 후)	**49,041**	**8,687**	**400**	**39,954**	부지 위치 변경 및 중앙투자 심사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 증 2,741백만원(5.9%)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49,041
부지매입비	- 부지매입비(매입완료)	8,687,777,664원	8,688
공 사 비	- 건축공사비	26,520,000,000원	27,263
	- 외부 공간 조성비	743,154,500원	
용 역 비	- 설계 및 인증수수료 등	4,289,139,593원	4,289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경비	62,220,932원	62
전시시설비	- 전시시설 및 콘텐츠 제작	1,800,000,000원	1,800
장비구입비	- 보존·복원 장비 구입비	3,600,000,000원	3,600
예비비	- 예비비	3,339,108,502원	3,339

• **취득재산**

(당초) 부지면적 11,012㎡, 건축연면적 11,800㎡

(변경) 부지면적 11,012㎡(변동없음),

건축연면적 7,800㎡(33.9%감)

• 주요시설 : 총 1동 ※ 지하주자창 미설치에 따른 시설 면적 감소

건물별	층별	연면적 (㎡)	주요시설	비 고
계		7,800		
경상북도 기록원	지하 1층	620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소화가스실 등	(당초) 11,800㎡ (변경) 7,800㎡
	지상 1층	2,060	로비, 카페테리아, 상설·기획전시실, 소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열람실 등	
	지상 2층	1,310	전산실, 등록·평가실, 복원처리실, 스캐닝실, 기록매체변환실, 사무실 등	
	지상 3층	1,905	일반문서고, 행정박물서고, 제본·편철실, 공조실 등	
	지상 4층	1,905	일반문서고, 시청각기록물서고, 공조실 등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건물)　※ '20년 부지 매입 완료

• 기대효과

- 경북 특성에 맞는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지방기록자치 실현
- 세계기록유산 및 한글기록의 중심지인 경북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신도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중요 기록물의 기억저장고로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②「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건립

• 목　　적 : 공유스테이션* 핵심부품 평가 검증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 거점으로 센터 구축

* 공유스테이션 : 사용자가 배터리를 통하여 직접 충전하는 대신,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장착하는 시스템을 의미

• 사업기간 : 2022. 4. ~ 2024. 7.

※ 총사업기간 : 2022. 4. ~ 2026. 12.(5년)

• 위　　치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404 (구어2 일반산업단지 內)

• 총사업비 : 42,338백만원

(국비 26,838, 도비 3,900, 시비 9,100, 민자 2,500)

※ 소유지분 도 30% : 시 7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42,338		7,538	34,800	
국비	26,838		5,238	21,600	
도비	3,900		510	3,390	
시비	9,100		1,190	7,910	
민자	2,500		600	1,900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42,338
용역비	- 설계비	1식× 280,000,000원	810
	- 감리비	1식× 394,000,000원	
	- 인증비	1식× 136,000,000원	
○공사비	- 건축	1식× 3,740,000,000원	6,270
	- 기계	1식× 910,000,000원	
	- 전기	1식× 830,000,000원	
	- 통신	1식× 310,000,000원	
	- 소방	1식× 330,000,000원	
	- 조경	1식× 150,000,000원	
	- 토목	1식× 520,000,000원	520
기 타	-장비구축 및 운영	1식× 12,250,000,000원	34,738
	-기술개발	1식× 16,838,000,000원	
	-표준화	1식× 2,500,000,000원	
	-기업지원	1식× 3,150,000,000원	

• **취득재산 : <u>건축연면적 2,501㎡</u>**

※ 기존 취득 부지 4,200㎡(도 3 : 시 7)

• 주요시설: 1개동(연구동, 평가동 신축)

건물별	층별	연면적(㎡)	주요시설	비 고
계		2,501		
연구동	지상 1층	555	대회의실, 소회의실, 접견실 등	
	지상 2층	555	관제실, 센터장실, 회의실 등	
	지상 3층	555	연구실, 회의실, 전산해석실, 문서보관실 등	표준화 연구 등
평가동	지상 1층	836	부품평가실, 지그보관실, 샘플보관실, 공조실 등	평가검증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건물)

• 기대효과

- 경주에 구축 중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센터'와 연계하여 미래차 부품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기존 도내 내연 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의 미래차 분야 진출 촉진

③「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건립

• 목 적 :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고전압 배터리 팩 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대량 평가를 위한 자동화 평가 센터 구축 필요

• 사업기간 : 2022. 4. ~ 2024. 9.

※ 총사업기간 : 2022. 4. ~ 2025. 12.(4년)

•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산 63-1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內)

• 총사업비 : 31,0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5,100, 시비 15,900)

※ 소유지분 도 30% : 시 7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31,000		6,600	24,400	
국비	10,000		1,300	8,700	
도비	5,100		390	4,710	
시비	15,900		4,910	10,990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31,000
용역비	- 설계비	1식 × 300,000,000원	500
	- 감리비	1식 × 200,000,000원	
공사비	- 건축공사비	1식 × 3,040,500,000원	7,000
	- 기계설비공사	1식 × 1,676,500,000원	
	- 조경공사	1식 × 114,400,000원	
	- 부대비	1식 × 292,600,000원	
	- 관급자재	1식 × 1,876,000,000원	
부지매입비	- 부지매입(시비 100%)	1식 × 3,500,000,000원	3,500
장비비	- 장비 및 설비 구축	1식 × 20,000,000,000원	20,000

• **취득재산 : <u>건축연면적 9,917.13㎡</u>**

※ 부지 16,528.93㎡(시유지)

• 주요시설 : 3개동(자동평가동, 연구/행정동, 실험동 각 1개소 신축)

건물별	층별	연면적(㎡)	주요시설	비 고
계		9,917.13		
자동평가동	지상 1층	4,958.80	배터리보관실, 자동평가 라인, 임시보관 등	
연구/행정동	지상 1층	1,652.55	연구실, 창고 등	평가 연구 및 행정 업무
	지상 2층	1,653.23	행정실, 세미나실 등	
실험동	지상 1층	1,652.55	장비수리실, 장비개발실 등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건물)

• 기대효과

-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폐배터리 거점수거 및 보관),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의 인프라를 활용·연계하여 자원순환(회수→평가→보관→매각) 체계 완비
- 사용후 배터리 고속 평가체계의 선도적 구축으로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산업 선점

④「저전력 지능형 IoT 부품센터」건립

• 목 적 : IoT 기술장비 활용을 위한 연구동 및 테스트베드 기능의 시험생산동 건립으로 지역 물류 부품 서비스 기반 조성 확보를 위함

• 사업기간 : 2022. 4. ~ 2024. 2.

※ 총사업기간 : 2022. 4. ~ 2024. 12.(3년)

• 위　　치 : 영천시 녹전동 974-3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內 보잉 MRO센터)

• 총사업비 : 17,509백만원 (국비 5,692, 도 3,488, 시 8,156, 기타 173)

※ 소유지분 도 30% : 시 7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17,509		3,041.7	14,467.3	
국 비	5,692		727	4,965	
도 비	3,488.4		678.7	2,809.7	
시 비	8,155.6		1,589	6,566.6	
기 타	173		47	126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17,509
설 계	- 설계비	1식 × 194,500,000원	434.5
	- 감리비	1식 × 240,000,000원	
건 축	- 건축	1식 × 1,738,500,000원	2,897.5
	- 전기	1식 × 579,500,000원	
	- 통신	1식 × 347,700,000원	
	- 소방	1식 × 231,800,000원	
부지매입비	- 부지매입 등(현물제공)	1식 × 342,000,000원	342
기 타	- 장비 구축 및 운영비	1식 × 13,835,000,000원	13,835

• **취득재산 : 건축연면적 1,440㎡** ※부지 2,390㎡(도 5 : 시 5)

• 주요시설 : 2개동

건 물 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계(2개동)		1,440		
저전력 지능형IoT 부품센터(신축)	지상 1층	1,012	저전력 지능형 IoT부품센터 (시험생산동)	
저전력 지능형IoT 부품센터(리모델링)	지상 1층	428	저전력 지능형 IoT부품센터 (사무동)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건물)

•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관련분야 산업육성으로 적용대상 경쟁력 강화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벨트 및 전자부품 산업벨트 등 전후방 파급효과 및 지능형 물류부품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및 연계기업 100여 개사 육성
-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물류부품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해 경북권 물류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기대

⑤「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청사」 건립

• 목 적 :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실현』을 위한 농식품전담기관 청사 건립 및 본원과 경북농민사관 학교 통합 운영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 기대

※ 민선7기핵심공약사항(소득걱정없는三촌(농산어촌)경북! → 경북농식품유통전담기관 설립)

- 사업기간 : 2019. 1. ~ 2024. 12.
- 위　　치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0, 742
- 총사업비 : 23,021백만원 (도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23,021	-	1,800	21,221	
도 비	23,021	-	1,800	21,221	
시 비	-	-	-	-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23,021
공사비	- 업무시설	15,349,500,000원	19,803
	- 지하주차장	3,874,500,000원	
	- 기반 및 공원 조성 등	579,000,000원	
설계용역비	- 설계비	820,700,000원	1,140
	- 설계의도구현비용	65,333,000원	
	- 인증용역비, 설계공모보상비 등	254,080,000원	
건설사업관리비	- 감리비	1,674,187,000원	1,674
인증수수료	- 에너지절약계획서, BF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녹색건축인증 등	43,368,600원	43
기타비용	- 측량비, 지반조사비, 시설부대비, 설계경제성(VE) 등	360,858,000원	361

- **취득재산 : <u>건축연면적 6,000㎡</u>**

※ 부지 현물배당(9,989㎡, 개발공사)

• 주요시설 : 1개동(업무시설, 농식품홍보·전시실, 교육시설 등 신축)

건 물 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 고
계(1개동)		6,000		
지하주차장 등	지하 1층	2000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39면)
농식품 홍보·전시실	지상 1층	1110	사이소 고객지원센터	지상주차장(104면)
업무시설	지상 2층	1350	사무실(진흥원+농민사관학교) 영상촬영실, 문서고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강의실
교육시설	지상 3층	1540	강당, 회의실, 강의실	강당(150명 정도) 중강의실 2, 소강의실 2 IT강의실 1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건물)

• 기대효과

-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농식품 유통 단계 축소 및 농식품 유통 혁신
- 소재지가 분리(본원-예천, 경북농민사관학교-군위)된 기관의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및 현장 중심 농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⑥「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건립

• 목 적 :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 심화 방지 및 가족 갈등해소를 위한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 위　　치 : 경주시 천군동 산291-1 일원
- 총사업비 : 29,000백만원 (국비 14,500, 도비 14,500)

※ 소유지분 도 1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29,000	0	1,000	28,000	
국 비	14,500	0	500	14,000	
도 비	14,500	0	500	14,000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29,000
설 계	- 설계비	1식× 1,000,000,000원	1,000
공사비	- 감리비, 건축비, 부대비	1식× 28,000,000,000원	28,000

- **취득재산 : <u>건축연면적 7,000㎡</u>** ※ 부지 20,000㎡(경주시 부지)
- 주요시설 : 1개동

건 물 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 고
계		7,000		
경북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지하 1층	700	기계실, 주차장	
	지상 1층	3,300	문화・스포츠+교육・상담+숲체험	
	지상 2층	3,000	객실(70실)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건물)
- 기대효과
  -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과 사회 통합 기여
  - 장애인 특화 수련시설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시 장애인을 위한 전담 인프라로 활용

⑦「울릉소방서」 건립

- 목　　적 :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특성상 외부소방력 지원 곤란으로 인한 자체 재난 대응력 필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위　　치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4-8 외 8필지
- 총사업비 : 21,140백만원 (도비 18,640, 군비 2,500)
  ※ 건축물 소유지분 도 1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21,140	2,500	60	18,580	
도 비	18,640		60	18,580	
군 비	2,500	2,500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18,640
설 계	- 설계비	1식 × 890,000,000원	3,740
	- 감리비	1식 × 2,850,000,000원	
건 축	- 건축	1식 × 10,851,000,000원	14,820
	- 전기	1식 × 2,545,000,000원	
	- 통신	1식 × 1,144,000,000원	
	- 소방	1식 × 280,000,000원	
기 타	- 부대비용	1식 × 40,000,000원	40
부 지	- 부지매입비(514㎡)	1식 × 40,000,000원	40

• **취득재산 : <u>부지 514㎡, 건축연면적 3,930㎡</u>**

• 주요시설 : 1개동

건 물 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 고
계		3,930		
울릉소방서	지하 1층	250	기계/전기/발전기실	- 소방서 3,630㎡ - 훈련탑 300㎡
	지상 1층	1,475	창고, 119안전센터, 훈련탑	
	지상 2층	935	각 과 사무실, 훈련탑	
	지상 3층	775	회의실, 체력단련실, 훈련탑	
	지상 4층	495	비상대기숙소, 훈련탑	

• 계약방법 : 수의계약(부지), 제한경쟁입찰(건물)

• 기대효과

- 청사 신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현장대응력 강화
- 소방사각지대 해소로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경북 실현

⑧「성주소방서 별관동」증축

- 목　　적 : 소방청사 증축으로 협소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 총사업비 : 3,599백만원 (도비)　※ 건축물 소유지분 도 1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도 비	3,599		148	3,451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3,599
설 계	- 설계비	1식 × 148,000,000원	185
	- 감리비	1식 × 37,000,000원	
건 축	- 건축	1식 × 2,484,000,000원	3,402
	- 전기	1식 × 578,000,000원	
	- 통신	1식 × 272,000,000원	
	- 소방	1식 × 68,000,000원	
기 타	- 부대비용	1식 × 12,000,000원	12

- **취득재산 : 건축연면적 1,369㎡**

• 주요시설 : 1동(별관)

건물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 고
계		1,369		
별관동	지하 1층	150	기계실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지상 2층	450	서장실,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지상 3층	400	재난대응과, 소회의실, 심신안정실	
	지상 4층	369	아이행복돌봄터, 당직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건물)

• 기대효과

- 출동부서와 행정부서의 공간분리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 협소한 청사 증축으로 소방이미지 제고 및 후생복지 강화

⑨「상주소방서」 이전 부지 교환

• 목　　적 : 상주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이 '23. 5월경 준공 예정으로 현 부지(도 소유)와 이전 부지(시 소유) 교환으로 공유재산관리 일원화

• 사업기간 : 2022년

• 교환대상 : **(취득) 10,384㎡, 3,011백만원**
(처분) 1,865㎡, 3,171백만원

- **교환차금 : 159,430,760원(상주시 → 경상북도)**
※ 감정평가 기준

구 분		취 득		처 분
		이전 예정부지		현 소방서 부지
소 유		상 주 시 ※ 건물 : 경상북도 소유		경상북도 ※ 건물 : 상주시 소유
위 치		상주시 만산동 479-1번지 외 13필지	상호↔교환	상주시 서성동 55-1
면 적		10,384㎡		1,865㎡
지 목		대지, 잡종지 등		대지
교환산정금액	공시지가	1,090,064,500원 (평균가 105,621원/㎡)		2,776,985,000원 (1,489,000원/㎡)
		1,686,920,500원 (공시지가 차액)		
	가감정평가 ('21기준)	3,011,069,240원 (289,972원/㎡)		3,170,500,000원 (1,700,000원/㎡)
	교환차금	159,430,760원		

※ 상주시 이전·신축 예정부지 조성사업비 3,052백만원〔보상비 2,262, 조성비 790〕 소요

- 교환방식 : 상호협의에 의함
- 기대효과
  - 소유권 일원화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상호 교환으로 상주시 업무시설 부족에 따른 공간 해소

⑩「경산소방서 중산119안전센터」부지 교환

- 목 적 : 현 중산119안전센터 부지(시유지)와 하양금락 임시 주차장 부지(도유지) 교환으로 공유재산 관리 일원화

• 사업기간 : 2022년

• 교환대상 : **(취득) 1,980.1㎡, 3,956백만원**

(처분) 1,634.0㎡, 3,454백만원

- 교환차금: 501,963,800원(경상북도→경산시) ※ 공시지가 기준

구 분	취 득		처 분
	현 중산센터 부지		경산시內 도 부지
소 유	경 산 시 ※ 건물 : 경상북도 소유	상호↔교환	경상북도
위 치	경산시 중산동 630-1		하양읍 금락리 133-13
면 적	1,980.1㎡		1,634㎡
지 목	대지		대지
공시지가	3,956,239,800원 (1,998,000원/㎡)		3,454,276,000원 (2,114,000원/㎡)
교환차금			**501,963,800원**

• 교환방식 : 상호협의에 의함

• 기대효과

- 소유권 일원화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상호 교환으로 경산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공간 해소

□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득	계	부지	4	23,890	15,694	
		건물	8	39,957	127,062	
		기타				
	1. 매 입	부지	2	11,526	8,727	
		건물	8	39,957	127,062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2	12,364	6,967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부지				
		건물				
		기타				
처분	계	부지	2	3,499	6,625	
		건물				
		기타				
	1. 매 각	부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처분	부지	2	3,499	6,625	
		건물				
		기타				
	3. 기타처분	부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계약방법)	취득사유 및 소유지분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건물연면적				
계	부지	2건	11,526	8,727			
	건물	8건	39,957	127,062			
1	부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8 (천년숲 앞)	11,012	8,687	'20. 5. (현물배당)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 - 소유지분 도 100% ※ 개발공사로 부터 현물배당	자치행정과 (계획변경)
	건물		7,800	40,354	'26. (일반경쟁)		
2	건물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404 (구어2 일반산업단지)	2,501	3,900	'24. 7. (일반경쟁)	-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 건립 - 소유지분 도 30%:시 70% (부지 취득 완료)	4차산업 기반과 (신 축)
3	건물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산 63-1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內)	9,917	5,100	'24. 9. (일반경쟁)	-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 센터 건립 - 소유지분 도 30%:시 70% ※ 부지 소유지분 시 100%	4차산업 기반과 (신 축)
4	건물	영천 녹전동 974-3 (하이테크파크 지구 內 보잉 MRO센터)	1,440	3,488	'24. 2. (일반경쟁)	- 저전력 지능형 IoT 부품 센터 건립 - 소유지분 도 30%:시 70%	4차산업 기반과 (신 축)
5	건물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0, 742	6,000	23,021	'22. 9. (일반경쟁)	-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 진흥원 청사 건립 - 소유지분 도 100%	농식품 유통과 (신축)
6	건물	경주시 천군동 산291-1	7,000	29,000	'25.12 (일반경쟁)	-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 힐링센터 건립 - 소유지분 도 100%	장애인 복지과 (신축)
7	부지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650-23	514	40	'22. ~ (수의계약)	- 울릉소방서 건립 - 소유지분 도 100%	소방본부 (신축)
	건물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4-8 외 8필지	3,930	18,600	'22.~'25. (제한경쟁)		
8	건물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1,369	3,599	'22.~'25. (제한경쟁)	- 성주소방서 증축 - 소유지분 도 100%	소방본부 (증축)

○ **교환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부지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계	토지	처분			3,499	6,625				
		취득			12,364	6,967				
9	토지	처분	대지	상주시 서성동 55-1	1,865	3,171	'22. 부터	부지, 건물 소유권 일치	경상 북도	소방 본부
		취득	대지 잡종지	상주시 만산동 479-1 외 13필지	10,384	3,011			상주시	
10	토지	처분	대지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3-13	1,634	3,454	'22. 부터	부지, 건물 소유권 일치	경상 북도	소방 본부
		취득	대지	경산시 중산동 630-1	1,980	3,956			경산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 방법을 표시

기타취득이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함.

※ 기준가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산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

□ **주요내용**

①「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사용료 감면

○ 목 적 :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장비도입을 위한 기업지원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출연기관)

※ 소유지분 도 30% : 시 70%

○ 사용기간 : 2022.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연간 감면액 20백만원 정도)

○ 사용대상 : 2개동

사 업 명	건 물 명	준공시기	소재지	건축연면적		비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지원 기반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22.6.	구미시 산동읍 5공단7로 8	계	1,220.94㎡	
				2개동	시험동 752.22㎡ 연구동 468.72㎡	※부지:시소유 (3,888㎡)

②「포항철강 거점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 6)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의 거점 기반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포항시 출연기관)

※ 소유지분 도 30% : 시 70%

○ 사용기간 : 2022.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연간 감면액 68백만원 정도)

○ 사용대상 : 1개동

사 업 명	건 물 명	준공 시기	소 재 지	부지	건 축 연면적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역거점 기반조성	포항철강 거점센터	'22.7.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00-2	11,814㎡	2,384㎡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할구역 :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 6개 시·군)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제4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수혜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효율적임

- 이에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필요

3. 위탁사무 내용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2항에 관한 사항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민간위탁 기간 : 2022. 11. 1. ~ 2025. 10. 31.(36개월)

5.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6. 소요예산 : 연 963백만원 정도

○ 인건비 : 상담원 등 사업수행관련 인건비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등

○ 사업비 :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치료비, 현장조사비 등

※ 소요예산은 연도별 국비 지원 금액에 따라 매년 금액 변경 될 수 있음

7.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 적정

○ 검토결과 : 붙임

※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정책기획관-5727(2022.5.24.)】

□ 향후계획

○ 2022. 7월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수탁기관 공모

○ 2022. 8월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2. 9월 : 계약체결,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2022. 11월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검토 사항		검토 의견(직영과 비교)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영 운영 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 기준, 직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관련규정 별첨 • 이는 공무원 증원, 조직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중장기적 절차로 인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 영역을 전담하며, 위험수준에 따라 심층관리 필요사례로 관리하는 등 전문 인력이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민간 심리치료센터 등 민간 외부자원과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사업 수행,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수행보다 관련 분야(사회복지·아동·심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 활용으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통해 성과측정이 가능하며, 아동복지법 제47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를 실시(보건복지부)하여 사례관리, 심리치료, 조직·인력 네트워크 등 전 분야에 대한 성과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례관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진업무에 대해 분기 실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 결과보고 등으로 사업운영 확인 및 관리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81개소 중 78개소 민간위탁 운영, 3개소* 직영운영('22.4월 현재) * 서울특별시, 서울노원,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

□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필요성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과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문적인 노인학대 사례관리와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

○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노인학대사례 개입·상담 및 조사,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3. 위탁사무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신고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

○ 운영위원회,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체사례회의 운영

○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개발 및 연계

○ 지역단위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인권교육 운영

○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4. 위탁시설 개요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소 재 지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김천시 소유건물 활용)

○ 시설규모 : 부지면적 980㎡, 연면적 404.26㎡(2층 건물)

5. 민간위탁 기간 : 2022. 7. 1. ~ 2027. 6. 30.(5년)

6.「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2. 4. 19.(화)

○ 심의방법 : 위원회개최 및 심의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 심의위원 : 6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4)

○ 심의결과 : 적정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7. 소요예산 : 연간 382백만원(국비 191, 도비 191)

※ '22년도 기준

○ 인건비 : 8명(관장 1, 실장 1, 대리 2, 상담원 4)

○ 운영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출장비, 기타운영비 등

○ 사업비 : 사례관리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 노인인권네트워크 구축사업, 기관역량강화사업 등

8.「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 심의기간 : 2022. 04. 08.(금) ~ 04. 11.(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사전 적정성

○ 심의위원 :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 심의결과 : 적정〔별첨〕

□ 향후계획

○ 2022. 6월 : 재계약 체결,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2022. 7월~ :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별 첨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총괄〕

평가영역 (배점)	평 가 지 표	배점	배 점 구 분				평가 점수
			우수	적절	보통	미흡	
총 점		100점					88.2
A. 시설 및 환경		6점					5.5
A. 시설의 접근성 (6점)	A1. 시설의 접근성	2	2	1.5	1	0.5	1.6
	A2. 기관의 쾌적·편리성	2	2	1.5	1	0.5	1.9
	A3. 기관 내·외부의 위험요인	2	2	1.5	1	0.5	2
B. 재정 및 조직운영		24점					18.6
B. 재정 및 조직운영 (24점)	B1. 사업계획의 수립	2	2	1.5	1	0.5	2
	B2.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록	4	4	3	2	1	4
	B3.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2	2	1.5	1	0.5	1.6
	B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구성	2	2	1.5	1	0.5	2
	B5. 기록관리	4	4	3	2	1	3.8
	B6.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4	4	3	2	1	2.3
	B7 후원금 비율	2	2	1.5	1	0.5	0.7
	B8 직원 1인당 급여 자부담액	2	2	-	-	0	0.3
	B9. 운영평가	2	2	1.5	1	0.5	1.8
C. 인적자원 관리		20점					16.7
C. 인적자원 관리 (20점)	C1. 법정 직원수 대비 평균 직원 충족율	2	2	1.5	1	0.5	2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2	2	-	-	1	2
	C3. 관장의 전문자격보유 여부	2	2	1.5	1	0.5	1.8
	C4. 직원의 이(퇴)직률	2	2	1.5	1	0.5	1.3
	C5.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2	2	1.5	1	0.5	1.8
	C6. 교육활동비	2	2	1.5	1	0.5	1.4
	C7. 직원채용과 신입직원 교육	2	2	1.5	1	0.5	1.5
	C8.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2	2	1.5	1	0.5	1.8
	C9. 직원의 근무여건	2	2	1.5	1	0.5	1.1
	C10. 인사평가	2	2	1.5	1	0.5	1.9

평가영역 (배점)	평 가 지 표	배점	배 점 구 분				평가 점수
			우수	적절	보통	미흡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28점					26.8
D. 사례 관리 (28점)	D1. 사례개입 실효성	4	4	3	2	1	3.8
	D2. 사례개입의 적절성	4	4	3	2	1	3.8
	D3. 상담실 운영	2	2	1.5	1	0.5	1.9
	D4. 프로그램실 운영	2	2	-	-	1	1.8
	D5. 사례판정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	2	1.5	1	0.5	1.9
	D6. 상담전화의 적절한 대응 및 관리	2	2	1.5	1	0.5	2
	D7. 연구개발실적	4	4	3	2	1	3.5
	D8. 예방활동 실적	2	2	-	-	1	2
	D9.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2	2	1.5	1	0.5	2
	D10. 프로그램 운영평가	2	2	1.5	1	0.5	1.9
	D11. 특성화사업	2	2	-	-	1	2
E. 이용자의 권리		8점					7.8
E. 이용자의 권리(8점)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2	2	1.5	1	0.5	2
	E2. 노인학대 상담건수	4	4	3	2	1	3.8
	E3. 자체 사례회의	2	2	1.5	1	0.5	2
F. 지역사회 관계		14점					12.8
F. 지역사회 관계 (14점)	F1. 지역사회 조직 실적	2	2	-	-	1	2
	F2. 자원봉사자 관리	2	2	1.5	1	0.5	1.9
	F3. 지역사회 내 후원활동	2	2	1.5	1	0.5	1.4
	F4. 지역 내 관련단체와의 연계수준	2	2	1.5	1	0.5	1.9
	F5. 노인학대예방 홍보 연간실적	2	2	-	-	1	2
	F6. 기관정보 제공노력	2	2	1.5	1	0.5	1.6
	F7. 지역사회와의 교류	2	2	1.5	1	0.5	2

※ 평가기준 : 80점 이상(우수), 70점 이상(적절), 60점 이상(보통), 60점 미만(미흡)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2년 6월 23일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주요내용**

1. 취득재산 : 92,701,100천원

- 건 물 : 26,228㎡ 92,701,100천원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20건)

- 포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1,320㎡	3,153,587천원
- 김천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838㎡	3,782,964천원
- 구미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1,044㎡	3,729,484천원
- 문경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960㎡	3,873,842천원
- 상주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2,052㎡	6,916,663천원
- 청송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911㎡	3,686,429천원
- 영양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1,384㎡	4,156,073천원
- 청도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792㎡	2,327,883천원
- 예천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2,352㎡	7,210,210천원

- 봉화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731㎡	2,837,981천원
- 울릉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1,480㎡	5,818,667천원
- 곡강초등학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 취득	613㎡	2,566,506천원
- 문충초등학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 취득	659㎡	2,620,507천원
- 죽장초등학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 취득	613㎡	2,900,684천원
- 모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	594㎡	2,092,412천원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취득	4,000㎡	16,088,667천원
-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관 취득	951㎡	3,268,755천원
- 구미정보고등학교 생활관 및 실습관 취득	2,646㎡	8,220,000천원
- 고령고등학교 생활관 취득	1,202㎡	3,976,887천원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다목적 실습장 취득	1,086㎡	3,472,899천원

2. 처분재산 : 530,699천원

- 토 지 : 13,758㎡	418,243천원
- 건 물 : 822㎡	112,456천원

○ **폐교재산 매각(1건)**

- (구)삼분초등학교 매각	530,699천원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30·331회 임시회)

●

2022. 7. 인쇄 / 2022. 7.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